

2014년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 설명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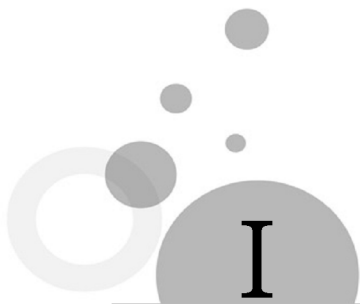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5
III.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15
IV.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기관 이행실태 점검결과	29
V. 협조사항	33
VI. 부임자료	37
1. 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39
2. 의원윤리강령과 의원행동강령 통합 표준안	49
3.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제정 현황	59
4.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60
5.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	61



추진 배경

I

추진 배경

□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열악한 의정 여건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한 의회 상 정립 등 큰 성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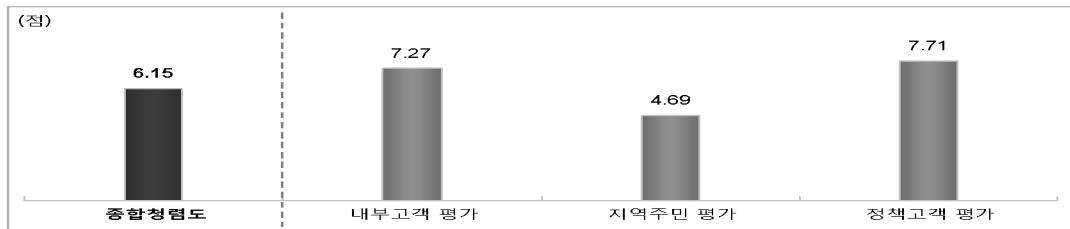
□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외유성 국외공무여행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

※ OO도의회 OO위원장은 주점·노래방 등에서 업무추진비 328만원을 사적 사용

※ OO구의원 12명은 업무추진비로 2,613만원 상당의 유류를 개인차량에 주유

○ '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5점**으로, 지역주민 평가점수가 4.69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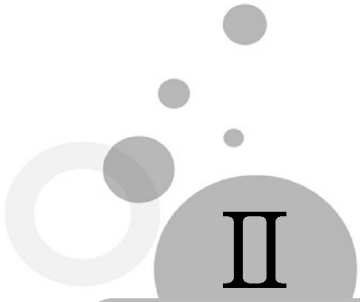
※ '13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는 광역 7.20점, 기초 7.60점('13.12월)



□ 의원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은 미진한 상태

※ '14.6월 현재, 68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광역 3, 기초 65)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 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및 **조례제정 필요**



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1. 제정배경

- 「공무원 행동강령」 최초 제정 시(2003년),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고 의정활동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 대두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 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대통령령) 추진

2. 추진경과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권익위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
 - 지방의회의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09. 7. ~ 10.), 국민인식도 조사('09. 11.)
 - ※ 제정 필요성 : 일반국민(64.3%), 지방의원(52.0%), 공무원(64.0%)
 - 공청회('09. 12. 15.) 및 관계기관 협의('10. 1. ~ 4.)
 - ※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의회 등 556개 기관
 - 행정규제 심사('10. 6. 4.) 및 법제처 법령안 심사('10. 7. 23.)
 - 국무회의 의결('10. 10. 26.)
 - 대통령령 제정·시행('10. 11. 2. 제정 · '11. 2. 3. 시행)

3.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 (제2조)
- 지방의회의원이 본인·배우자·친족(4촌 이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을 회피 (제4조)
-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 (제7조)
-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의장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 (제19조)
- 그 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제15조), 성희롱 금지 조항(제18조) 등 총 15개 주요 행위기준을 규정

< 15개 행위기준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4)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5) ▪ 인사 청탁 등의 금지(§.6)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7)	▪ 이권 개입 등의 금지(§.8)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9)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10)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1) ▪ 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12)	▪ 국내외 활동 제한 등(§.13)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14) ▪ 영리행위의 신고(§.15) ▪ 금전 거래 등 제한(§.16)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7) ▪ 성희롱 금지(§.18)

II

주요 조문 설명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규정 취지

-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 예산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불공정 사례를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동일한 규정

□ 내용 해설

- 예산
 - 여비·업무추진비·인건비·수당·사업비 등 모든 공공 예산
- 목적 외 사용
 - 예산 관련 법령·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판단
- 재산상 손해
 - 소속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

□ 위반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친분자와 타 지역에서 식사를 하거나 심야시간과 휴일에 주점 등에서 114만원을 부당하게 사용(○○일보, '13년 6월)
- △△시의회 A의원은 공금 9,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일보, '10년 7월)
- △△시의회 B의원은 허위준공검사서로 도의원 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일보, '10년 7월)

2.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규정 취지

-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방지
- 특정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이 위원인 의원에게 금품등을 건네며 청탁하는 부정 소지 차단

□ 내용 해설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제7조제1호)

- 개별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예>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상임위원회별 소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심의·의결

- 제7조는 의원이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문·고문·검토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심의·의결인지 또는 자문·검토 등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의원이 해당 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

□ 위반 사례

- △△시의회 C의원은 아파트 재건축 관련업체로부터 건축심의 통과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재건축 심의에 참여하는 동료 의원에게 심의 통과를 청탁(△△신문, '13년 11월)
-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A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구의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수수(△△신문, '09년 5월)

3. 국내외 활동 제한 등(제13조)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규정 취지

- 의원이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
- 의원이 금전 제공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 내용 해설

- **외부 기관·단체**: 해당 의원의 소속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시민단체 등도 포함
-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만 제한**
 - 개인 여행, 가족 여행 등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음
- **사전 승인, 사후 보고서 제출**
 - 의장은 사전 승인 심사 시 필요할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상황 공개**
 -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국내외 활동 공개 게시판’ 구축

□ 위반 사례

- △△시의회 A의원 등은 직무관련단체인 OO협회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사후 활동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음(권익위, '14년 1월)

4.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 규정 취지

-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편법 금품 수수 행위 방지 및 건전한 경조 문화 조성

※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와 동일한 규정

□ 내용 해설

- 소속 직원(제1항제2호): 의회 사무처(국/과) 소속 직원
 -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시·군·구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1항제2호의 소속 직원에 해당되지 않음
- 내부통신망(제1항제3호)
 -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인트라넷, 내부메시지 등)
 - 의회 홈페이지 등 내부통신망이 아닌 곳에 의원 경조사 게시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과 직원에게만 별도의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외부 제3자의 게시판 접근 차단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5만원 이내로 규정·운영
- ※ 의장은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가액을 정하고 이를 의회별 행동강령에 규정

< 질의 회신 >

Q. 의회 의원과 집행기관(도·시·군·구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교육청 등) 직원이 동일한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경우

A. 해당 인트라넷 경조사 게시판에 의원 경조사를 게재할 경우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는 집행기관 직원도 볼 수 있게 되므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
 ⇒ 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게시판을 생성하거나 사내 메시지 등 다른 방법 이용

Q.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와 관련하여,

- ① 의원이 되기 전 구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지,
- ② 의원이 아닌 의회 소속 직원이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청 직원들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가능한지,
- ③ 구청 직원들이 주변의 소문을 듣고 결혼식장을 찾아온 경우에 추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답례의 글을 띄우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A. ① 의원이 되기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직원이라 하더라도 경조사를 통지할 때 해당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다면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직무관련자 관계 여부는 경조사 통지자(의회 소속 직원)가 아니라 경조사의 주체(의원)를 기준으로 판단.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 있음(위반 사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
 ③ 해당 기관의 내부통신망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의 규율 사항이 아님

5.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2조]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규정 취지

-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운영 자문기구를 둠으로써 의원간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익에 의한 왜곡·편파 운영 방지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관계

- 행강운영 자문위는 의장의 행동강령 운영부담을 경감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1/2 이상으로 구성됨
- 행강운영 자문위는 윤리특위의 前단계로, 행동강령 위반사건의 처리에 있어 행강운영 자문위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윤리특위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정계를 결정



Ⅲ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1.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3. 10. ~ 12월

□ 대상기관 : 10개 지방의회(광역 8개, 기초 2개)

○ (선정기준) 기관의 규모(의원수, 예산, 사무처직원 등), 예산낭비 사례 등 언론노출빈도,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요 점검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무국외여행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전반

※ 점검대상 범위 : 2012. 8. ~ 2013. 7월

2. 중점 점검사항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안전행정부 부령)위반 여부 병행 검토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이권개입 위반 여부

○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는 등 금품수수 행위

○ 소관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의결활동 여부

○ 외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국내외 활동 수행 시 사전 승인 및 활동보고서 공개 여부

○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여부

Ⅱ

실태점검 결과 및 문제점

1.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해당 의회운영 및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자택 인근에서 지인과의 개인적 식사비용 등에 사용**

【 주요 위반 사례 】

- ○○시의회 ○○위원장은 자택 인근에서 친분이 있는 구의원 및 구청직원들과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14건, 177만원)
- ○○시의회 부의장은 자택 인근 지역에서 의회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간담회 명목으로 숙박비 4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 ○○도의회 ○○위원장은 자택 인근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인과의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29건, 49만원)

- 업무추진비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심야시간(23시 이후)에 사용**

【 주요 위반 사례 】

- ○○도의회 ○○위원장은 ‘상임위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자택 인근 주점 및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 (61건, 3,828,400원)

- 개인용 차량에 주유 및 기타 사적 사용

【 주요 위반 사례 】

-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11. 2. 3.이후 최근까지 총372건, 2,613만원 어치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입함
-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병원진료비, 영화관 팝콘, 대학 교재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2.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입원 위로금을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경조비 집행대상이 아닌 의원 형제 사망, 퇴직 직원 장모상 등에까지 업무추진비로 경조비 부적절한 집행

【 주요 위반 사례 】

- ○○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4명은 사무처 직원 입원 시 각 10만원~30만원씩 현금(70만원) 및 화환(20만원) 등 총 90만원을 입원 격려금으로 1인에 대해 지출
-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동료 의원의 병모상에 각각 업무추진비로 조화·경조금을 집행함으로써 총 60만원을 1인에 대해 지출
- 그 외 동료의원 형제 사망, 퇴직 직원 장모 사망, 개인사무실 개소식, 이사 축하, 총동창회 회장취임 축하, 지인 미술전 개최 등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화환 등을 제공

3. 사적 모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 업무추진비로 지역 내 유력인사 친목단체 및 사적모임의 회비 납부

【 주요 위반 사례 】

- ○○시의회 ○○의장은 소속지역 유력인사들의 모임인 ‘□□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1건, 662,320원)
- ○○군의회 ○○의장은 소속지역 내 기관장 친목단체인 ‘□□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5건, 675,000원)

4.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 지방의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지만, 영향력 행사 및 이권개입이 용이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함

【 주요 위반 사례 】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집행기관인 소속 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석하여 70건을,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 4명은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여 31건을, 또 다른 의원 4명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참석하여 12건의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함

5.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지원 활동 등

- 외부지원 국내외 활동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음

【 주요 위반 사례 】

- ○○도의회는 외부지원으로 수행한 국외활동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 ○○시의회는 외부지원에 의한 국외활동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내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메뉴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내부직원만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에 게시

6.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하지 않고 참석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

【 주요 위반 사례 】

- ○○시의회 의원 3명은 ○○시 시설관리공단의 위원회에 참석하여 각각 20만원의 대가를 받았으나 이를 의장에게 미신고

Ⅲ

지방의회 회계집행 부적정 사례

1. 과도한 명절선물 구입 배포

- 다수 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예산을 사용해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

【 주요 부적정 사례 】

- ○○시의회 등 6개 의회는 각 1,000~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설·추석 등에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여 동료 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나눔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평균 17%)
- ○○도의회 부의장은 개당 19만5천원인 전복선물세트 12개(234만원)를 구매하여 동료 의원 9명과 도청 국·과장 3명에게 선물로 제공
- ○○도의회 ○○위원장은 2012. 12월. 및 2013. 4월 등 2회에 걸쳐 소속 위원 15명에게 개당 20만원인 한우선물세트를 격려품으로 제공 (총600만원)

2. 지출증빙서류 미구비 등 회계규정 미준수

-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전표별로 집행일시, 장소, 대상자 등을 명확히 하여 각각 품의를 하여야 하지만, 관련 품의 및 증빙자료도 없이 예산을 집행함

【 주요 부적정 사례 】

- ○○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개별 품의서나 관련 영수증 등의 예산집행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월 2회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괄로 지출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및 집행목적은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을 미 준수

3. 선심성 현금 격려 및 무분별 선물 제공

- 현업부서 종사자가 아닌 비서실 직원이나 의회 사무처 직원 등에 선심성 격려금 집행 및 나눠 먹기식 선물 예산 집행

【 주요 부적정 사례 】

- ○○도의회 전·현직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여 2011.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서실 직원들(5명)만을 대상으로 42회에 걸쳐 격려금을 지급(총 715만원)
- ○○도 의장단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 콘서트’ 등 지역 언론사 주관 공연권 총 38매를 구입하여 사무처 직원에 배포 (총 365만원)
- ○○도 의장단은 ‘도의원 및 직원 격려’등의 명목으로 와인,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를 구입해 동료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배포 (총 1,236만원 / 물품 수불부 미작성)
- 그 외 ‘화이트데이 기념 여직원 격려’, ‘빼빼로데이 기념 직원 격려’ 등 업무성과 및 노고와 무관한 선심성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 배포

IV

지방의회별 조치결과

1.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5조) 위반

- (위반사항) 공휴일·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자택인근 지인과 식사, 경조사비 부당집행, 개인 차량 주유비 등 (총 885건)

⇒ OO시의회 등 10개 기관 44명, 환수대상 총 51,134천원

- (조치결과) OO시의회 등 10개 기관의 개별 환수금액은 총 39,313천원

- 2개 기관(OO도의회, OO도의회)은 신분상 조치(서면경고)도 병행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환수금액 >

(단위 : 원)

의회명	위반금액	환수금액
A의회	3,037,500	3,037,500
B의회	3,558,460	3,258,460
C의회	1,844,800	1,722,320
D의회	638,400	638,400
E의회	2,624,670	2,624,670
F의회	1,801,790	1,801,790
G의회	2,166,600	2,166,600
H의회	7,728,400	7,728,400
I의회	27,058,649	15,660,540
J의회	675,000	675,000
계	51,134,269	39,313,680

2.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제한(제7조) 위반

- (위반사항)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 (건축·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의 심의·의결에 참여 (총 208건)

⇒ OO시의회 등 7개 기관 34명 위반

- (조치결과) 의원총회, 의장단회의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전달, 직무관련이 없는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등의 개선대책 마련
 - OO도의회는 신분상 조치(서면경고)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 개정
 - OO도의회는 신분상 조치(구두경고) 및 재발시 징계요구 예정

<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조치결과 >

의 회 명	조 치 내 용
A의회	▪ 위반사항 각 부서통보, 전문실에서 소속의원 개별보고
B의회	▪ 직무관련 없는 타 상임위원으로 추천 조치('13.7월) ▪ 각종위원회 위촉·운영방식 개선대책 수립·시행('13.8월)
C의회	▪ 관련규정 준수 안내 4회 : 의원총회('14.3월) 등
D의회	▪ 위반사항 상임위 통지, 사례전파 및 개선요구('14.4월)
E의회	▪ 의장단, 상임위원장회의 보고, 재발방지 다짐('14.2월)
F의회	▪ 위반자 서면경고 ▪ 소관 상임위 배제('13.11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13.12월)
G의회	▪ 위반자 구두경고 ▪ 재발시 징계요구(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제출)

3. 국내외 활동제한 등(제13조) 위반

- **(위반사항)** 외부지원으로 국내외 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활동보고서를 미공개 (**총 58건**)

⇒ OO시의회 등 8개 기관 58건 위반

- **(조치결과)** 홈페이지 메뉴 신설 및 미공개 사항 홈페이지 공개, 위반사항 전파 및 규정 준수 안내 등 조치

- OO도의회는 서면경고와 함께 추후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OO도의회는 신분상 조치(서면경고) 및 재발시 징계요구 예정

<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조치결과 >

의 회 명	조 치 내 용
A의회	▪ 전문위원실이 소속의원 개별보고, 홈페이지 공개 조치
B의회	▪ 홈페이지 공개 조치('13.9월) ▪ 위원 및 상임위 규정준수 안내('13.11월)
C의회	▪ 홈페이지 메뉴 신설·게시, 규정준수 안내(의원총회 등)
D의회	▪ 위반사항 상임위 통지, 사례전파 및 개선요구('14.4월)
E의회	▪ 홈페이지 공개 조치
F의회	▪ 의장단, 상임위원장회의 보고, 재발방지 다짐('14.2월)
G의회	▪ 위반자 서면경고, 홈페이지 공개 조치 ▪ 홈페이지 미게시자 추후 국외연수 신청 시 불이익 조치
H의회	▪ 위반자 서면경고 ▪ 재발시 징계요구(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제출)

4.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제14조) 위반

- (위반사항)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의장에게 서면신고를 하지 않는 등 행동강령 위반 (총 9건)

⇒ OO도의회 등 4개 기관 9명 위반

- (조치결과) 위반사항 전파, 규정 준수 안내, 대가를 받은 외부 강의시 사전 신고대상임을 SNS 등을 통해 지속적 안내 등 조치
- OO도의회는 위반자에 대해 서면경고

<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조치결과 >

의 회 명	조 치 내 용
A의회	▪ 위반사항 각 부서통보, 전문실에서 소속의원 개별보고
B의회	▪ 위원 및 상임위 규정준수 안내('13.11월)
C의회	▪ 관련규정 준수 안내 4회 : 의원총회('14.3월) 등
D의회	▪ 위반자 서면경고 ▪ SNS 등을 통해 대가 외부강의시 사전신고 안내

5. 기타 개선대책 마련 및 조치내용

- 행동강령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급기준 마련 등 개선 추진
 - (A의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개최(1.14), 업무추진비 자체 점검실시(반기별), 행동강령 소책자 제작·배부 등
 - (B의회) 의회 행동강령 제정 노력, 규정준수 안내
 - (C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공포 예정(5월), 의회개원 후 행동강령 교육 예정(6월)
 - (D의회) 사례 전파, 개원 후 행동강령 조례 제정 등 추진 예정
 - (E의회) 격려금품 등 지급기준 마련 및 교육(2월)
 - (F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검토,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방안 추진(T/F팀 구성), 업무추진비 사용·공개 규칙 제정 등
 - (G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14.상반기), 의회구성 후 조치 계획 안내('14.하반기)
 - (H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제정(2월), 의장 업무추진비 공개(1월), 의회 개원 시 청렴 선포식 개최(7월)



IV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기관 이행실태 점검결과

- 지방의회의원이 특정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부당하게 그 기관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방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시행('11. 2. 3.)된 지 3년이 경과 되었으나, 각급 지방의회의 자율적 제도 정착 노력 미흡

-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국외활동 지원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지 실태 점검 실시

- 점검 기간 : 2014. 1월 ~ 2월

- 점검 대상 : 11개 기관(광역 2, 기초 1, 교육청 1, 유관기관 6, 기업체1)

※ '13. 10월~12월 중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위반정도가 심한 3개 지역의회의 지원기관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 주요 점검내용

- 지원기관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품 등의 제공'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지원기관의 '이권 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 여부
- 외부지원과 관련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적정성 여부 등

Ⅱ

실태점검 결과 및 문제점

1.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 행정기관 예산을 ‘대행 사업비’나 ‘민간사업 보조금’ 등으로 유관기관에 교부하여 지방의원 출장비로 지원하거나 공직유관단체에 금전지원을 요청하여 지방의원 국외 출장비로 사용

- OO교육청은 민간사업 보조금인 ‘나라사랑 대탐방’ 사업비로 도의원 출장비 지원
- 유관기관인 OO에 금전지원을 요청하여 도의원(2명) 국외출장비로 사용(1,500만원)
- OO도는 OO연구원에 대행사업비를 교부하여 도의원(8명) 출장비 지원(3,062만원)
- OO시는 OO영상위원회가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여 도의원(4명) 출장비 지원(2,000만원)
- 출장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도의원(11명)에게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출장비 집행(2,286만원)

2.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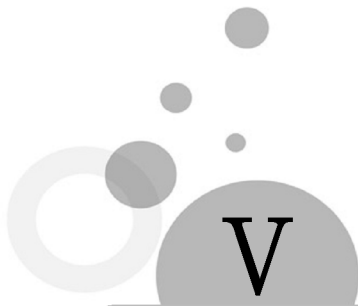
- ‘업무추진 편의 도모’, ‘예산 확보’ 등 이익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의회에 금품 등 제공

- 유관기관인 OO은 OO도 요청에 따라 광고선전비에서 도의원(2명) 출장비 지원(1,500만원)
- 유관기관인 OO문화예술재단은 ‘OO문화예술 교류사업’ 관련 중국 출장시 직무관련자인 도의원(5명)에게 출장비 제공(750만원)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 민간인 국외여비 등 사용목적이 특정된 예산을 집행이 불가능한 지방의원 국외출장비로 집행

- OO도 OO과 등 4개 부서는 ‘민간인 국외여비’ 사용 목적과 달리 도의원의 국외출장비로 집행(2,796만원)



협조사항

- ①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
- ②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③ 행동강령 위반방지 대책 강화
- ④ 행동강령 자체교육 및 권익위 컨설팅 활용

1.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

-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해당 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
 - 의회별로 ▲ 직무관련자의 범위, ▲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제한 기준, ▲ 금품등 수수 상한액, ▲ 경조금품 수수 상한액 등을 반영
- 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준수는 단순한 ‘의회 재량사항’이 아닌 ‘의회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

2.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를 위해 반드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제19조)되어 있으므로,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사항임

※ <2014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원 노력도 지표에 행동강령 조례제정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여부에 10점 부여 ('2014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 '14.4.10)

3. 행동강령 위반방지 대책 강화

○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 시 클린카드를 사용,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금지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집행,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 사용 금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전에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함

○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된 집행부 위원회 심의·의결 참여제한

- 직무관련 없는 타 상임위 의원으로 추천하는 방안 등 강구

○ 외부기관 지원 외유성 국외출장 자제

- 승인심사 강화 및 승인내용·활동보고서 공개

※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원의 국외출장여비는 의회비에서 집행

○ 지방의원의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준수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는 사전신고 대상임을 지속적 안내

○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 개선

- 목적이 불분명한 현금 격려 및 과도한 격려물품(선물) 구입 자제
- 예결위 기간 외 예결위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준수
- 지출증빙서류 미구비 등 회계규정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

4. 행동강령 자체교육 및 권익위 컨설팅 활용

○ 워크숍 등을 통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 행동강령 위반사례 소개 및 관련규정 숙지토록 안내

○ 외부강사 필요 시 권익위(행동강령과)에 의뢰

○ 조례 제정 등을 위한 권익위의 컨설팅 적극 활용



VI

붙임자료

1. 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2. 의원윤리강령과 의원행동강령 통합 표준안
3.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제정 현황
4.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5.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의회명)의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회명)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회명)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다. 그 밖에 (의회명)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의장은 필요시 “직무관련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회명)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심의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장은 필요시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의장은 필요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제공받는 금품등”을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 의장은 필요시 의원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을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장은 필요시 자문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

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에 따라 부의 안전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 사무처[사무국, 사무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

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의원윤리강령과 의원행동강령 통합 표준안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조례)은 ○○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시의회 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 의회 위원회 조례」 및 「○○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3장 행동강령

제1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용물이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24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9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이 제2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30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7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이 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강령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제정 현황^[14. 6.]

□ 총 244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27개) 중 68개 의회가 제정

	조례제정 의회	의회수
광역의회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3개
기초의회	[서울] 송파구,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 도봉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남구, 강화군, 부평구, 남동구, 옹진군 [광주] 남구, 북구, 동구, 광산구, 서구 [대전] 대덕구 [울산] 북구, 중구, 남구 [경기] 연천군, 평택시, 의왕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오산시, 과천시, 광명시, 화성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옥천군, 보은군 [충남] 태안군, 천안시, 계룡시, 예산군, 공주시, 청양군,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전북] 임실군, 진안군, 남원시, 김제시 [전남] 여수시,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영암군 [경북] 울릉군, 청도군, 울진군, 영덕군, 김천시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함천군	65개
		68개

IV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구 분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통 사항	이권개입금지	-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좌 동
	예산목적외 사용 금지	-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좌 동
	직무관련 정보 이용 제한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좌 동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좌 동
	외부강의등 신고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 신고	좌 동
	금전거래등 제한	-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거래 금지	좌 동
	경조사 통지경조 금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제한 - 경조금품 5만원 초과 수수 금지	좌 동
개정 사항	정 의	- 직무관련자 : 소관업무 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 : 이익,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 직무관련자 : 의안심사 등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공직자
	이해관계 직무 회피	- 자신의 이해 또는 4촌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회피	- 안건심의 등 활동에 본인 및 4촌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인사청탁금지	- 자신인사를 타인에게 청탁 금지 - 다른 공무원의 인사 개입 금지	- 직무관련자 인사 개입 금지
	공용물사적 사용 금지	- 공용물 사적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 각종경비, 시설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 금지 추가
	위반행위신고 및 확인	- 위반시 소속기관장, 권익위에 신고	- 사건처리 방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침
	기관별 행동 강령 운영	- 기관별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함	-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추가 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설치	-	- 의장의 자문에 응함 - 민간위원(1/2이상) 구성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	- 직무관련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제한
	의원 간 금품 수수 금지	-	- 직무관련 의원간 금품수수 금지
	영리행위신고	-	- 직무관련 영리행위 신고
	국내외활동 제한	-	- 기관·단체 지원 국내외활동 제한
	성희롱 금지	-	- 의원간,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제외 사항	공정한 직무 수행 저해지시	-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
	특혜의 배제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차별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신고	-
	알선·청탁금지	-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청탁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공직자 소개 금지	-
	행동강령책임관	- 4급이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구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성격	◦ 「지방자치법」 제38조	◦ 「권익위법」 제7조·제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성격	추상적 윤리기준	구체적 행동기준
적용기관	306개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집행기관, 교육감)	244개 지방의회 (기초 227, 광역 17)
운영주체	해당 지방의회 (윤리특별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해당 지방의회의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위법시징계	「지방자치법」 제86-89조	좌 동
제정	의무	재량
내용 비교	<u>의회별로 상이</u> <윤리강령> - 보통 5개 ○ 인격·식견함양, 예절지킴, 품위유지, 의사대변 ○ 공익우선정신, 성실직무수행 ○ 부정이득 도모·부당영향력 행사 금지, 청렴·검소한 생활을 숭상수범 ○ 충분한 토론, 적법절차 준수 ○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게 책임 <윤리실천규범> - 보통 8개 ○ 품위유지 ○ 청렴의무, 공정의심행동 금지 ○ 직권남용 금지, 지위남용, 부당영향력 행사 및 대가수수 금지 ○ 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 과도한 사례금 수수금지(신고의무 없음) ○ 직접적 이해관계 사안 사전소명 회피의무 ○ 재산신고 및 겸직신고 ○ 국외활동 성실 보고 ※ 그 외, 공직기밀 누설 금지, 영리행위 제한 등	<u>총 15개</u> <공정한 직무수행 4개>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등의 제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5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의원간 금품등 수수행위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6개>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영리행위의 신고 ○ 금전거래 등 제한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 성희롱 금지

2014년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 설명회

발 간 : 2014년 6월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문의전화 : (02)360-6657(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02)360-6655(공무원·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